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113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30.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## 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,  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2. 1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 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2 ‘청구원인’, ‘변경된 청구원인’ 및 ‘준비서면’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[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, 적법한 기일의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(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).]

판사 이디모데

별지